반월역 두산위브 더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문

두산 We've

- 본 단지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약과열지역에 위치하여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예치금액 납입인정금액 이상 납입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자 또는 세대원인 자로